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경고 조치	
당사자	성명(명칭)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어등빛 개인투자조합,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담빛 개인투자조합,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호연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43번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투자 의무 준수 여부, 업무의 집행 및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합 대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에는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되나,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어등빛 개인투자조합,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담빛 개인투자조합,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은 2022년도 정기검사 대상임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은 VICS 상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검사 실시계획을 통보(2021.8.12.)하였으나 검사에 불응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어등빛 개인투자조합,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담빛 개인투자조합,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 : 경고 ○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어등빛 개인투자조합,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담빛 개인투자조합,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법률 제18661호, 2022.6.29. 시행)</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 7.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 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감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시행)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생략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8. 23.>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표1(행정처분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5호, 2021.9.17. 시행)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주의 경고	경고			
의견제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고용민
	주소	세종시 가림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6	
	전자우편주소	gym1222@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제출기한	2023년 3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